

페리안드로스를 꿈꾸며

—서울법원 조정센터현장—



글. 황덕남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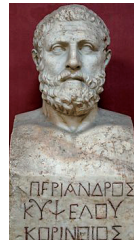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상임조정위원회제도 설치의 배경

신들의 왕 제우스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 여신을 위하여’라고 새겨진 황금사과의 주인을 정해달라는 세 여신의 요청을 묵동으로 있던 왕자 파리스에게 미루었다. 파리스는 이를 받아들여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주었고, 그 대가로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헬레네를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이로 인한 트로이 전쟁으로 파리스의 조국 트로이는 폐허가 되었다.

위 전쟁 후 코린토스의 참주이며 철학자인 페리안드로스는, ‘가장 현명한 철학자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는 글귀가 새겨진 황금술의 주인을 정하기 위하여 솔론, 탈레스, 비아스를 초청하였는데 이들은 황금술의 주인 자리를 서로 양보하다가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바치기로 하여 평화공존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건수는 1950년 약 63,000건이었는데, 2006년 약 126만 건으로 약 20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위증기소자는 94명에서 1,858명으로 역시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페리안드로스의 흉상
(출처 : Wikipedia)

약 20배 증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에 의하면, OECD 27개 회원국의 평균 사회갈등지수가 0.44인데, 우리나라는 0.71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이며,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으로 완화될 경우 1인당 GDP는 27.0% 증가하여 2002-2005년 GDP 기준으로 1인당 약 5천 달러의 증가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재판이 분쟁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과 국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황금사과 사건이 대전쟁을 유발시킨 원인이 된 반면, 황금술 사건이 평화공존의 계기가 된 것은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의 현실을 이에 비추어 본다면, 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2009년 상임조정위원회제도가 신설되었다.

상임조정위원 및 법원조정센터의 설치와 업무

2009. 2. 6.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직무를 수행할 법원을 지



서울법원 조정센터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하며, 해당법원의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 4. 서울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조정센터가 설치되고, 11명의 상임조정위원이 위촉되었으며, 2011. 4.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 조정센터가 신설되고 추가로 6명의 상임조정위원이 위촉되었으며, 2013. 4. 서울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에 조정센터가 신설되고, 상임조정위원은 모두 29명으로 증원되었다.

상임조정위원은 법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상시적 조정절차 운영을 통한 조정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속된 법원의 민사조정신청사건 전부와 조정회부된 소송사건 중 조정담당판사가 상임조정위원에게 회부하는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이 주재하는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의 조정사례

서울법원 조정센터에서 조정이 성립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재판이 분쟁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과 국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1〉

서울시내 모 의류상가에서 관리권을 둘러싸고甲과乙, 두 관리단 사이에 수년간 분쟁이 지속되었고, 관련된 소송에서 분쟁상대방의 적극적 항변 여부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판결들도 있게 되었다.甲관리단이 일정시기까지 상가관리를 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하다가 관리권이乙관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2개월 정도의 관리비를누가 징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甲은 입주자들을 상대로 약 200건의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乙은 관리비는乙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각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한편,乙은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었다. 각 사건의 소가는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모든 사건에서 관리권의 귀속문제로 소송자료는 상당한 분량이 제출되어 있었다. 관리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첨예하고,甲 이외에는 입주자이나乙 모두 조정기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아니하여 당초 조정센터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소송으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각 사건의 규모와 전체 사건 수를 파악한 후 전체 상임조정위원의 중지를 모아 조정센터에서의 분쟁해결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전체 상임조정위원이 여러 차례의 숙의를 거쳐 입주자들은 관리비 납부의사는 있으나 누구에게 납부하여야 할지가 문제일 뿐이므로,甲과乙이 공동구좌를 만들어 관리비를 징수한 후甲과乙사이에서 그 귀속문제를 가지고 다투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甲과乙 모두 수용하여 공동구좌를 만들었고, 위 사건은 입주자들로 하여금 공동구좌에 관리비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종결되었다. 후문에 의하면,甲과乙사에서 수납된 관리비의 귀속에 관한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사례 2〉

원고는 해외유학 후 귀국하여 유학기간동안 임대한 아파트를 인도받기를 희망하였는데, 임차인인 피고는 4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아야 인도할 수 있다며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아파트를 인도하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약 1년에 걸쳐 내용증명을 주고받다가 결국 원고가 아파트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제기 후 수 개월 만에 위 사건은 조정센터에 회부되었다. 조정과정에서도 양측은 모두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보증금의 지급과 아파트의 인도는 동시이행이라는 간단한 판결이 선고될 사건이었으나 그 이행방법을 놓고 상호 신경전이 팽팽하였다. 양측의 논쟁이 상당시간 진행된 후 보증금 상당액을 임대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escrow(편집자 주 : 제3자에게 기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볼 것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수긍하였고,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를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의 10%는 선이행하겠다고 제시하여 양측의 분쟁은 기대 이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사례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의 자산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기업의 전체 자산 중 일부에 대하여 평가가치에 이견을 보이게 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러한 의견차이로 전체 거래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서울법원 조정센터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래조건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후 매도인이 해당부분이 반영된 주식인수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하였

고,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는 상임조정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진행하였다. 3차에 걸친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해당자산의 평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3인의 상임조정위원이 논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측은 당초 합의한 대로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분쟁이 종결되었다.

상임조정위원의 역할과 기대효과

상임조정위원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률전문가들로, 분쟁당사자들에게 분쟁의 배경 및 의도, 집행 등 분쟁과 관련된 여러 관점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입증방법에 관한 분석 등 분쟁에서의 입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언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분쟁의 실상을 동영상으로 재현하지 못하는 한, 준비서면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분쟁당사자들은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입장을 직접 전하고 싶어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있다. 따라서 심판을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할 것이다. 아이엠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사이에서 생모를 가려내는 재판을 한 것으로 유명한 솔로몬은 일천 번째



필자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보스포루스(Bosphorus) 대교를 보고 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를 드린 후 소원을 묻는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재판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다. 즉, 분쟁당사자들은 말하고 싶어 하고, 심판자는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많은 장애를 안고 있다.

페리안드로스는 참주이지만, 코린토스의 번영을 이루었던 군주이기도 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비추어 본다면,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하는 것은 그 사회의 번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페리안드로스에 관하여 눈살 찌푸려지는 이야기가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가 코린토스의 번영을 이루었던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남기지 않도록 한 그의 조정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서울법원 조정센터에서 조정을 진행하면서, 2010. 5.부터 2012. 4.까지 2년간 처리한 사건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 약 40% 정도가 조정성공 또는 취하 등으로 종결되고, 재판부로 돌아간 사건들 중 약 1/3이 판결선고 전 조정·화해 또는 소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결국 조정센터를 경유한 전체 사건 중 60% 이상이 판결을 선고받지 않고 분쟁이 종결된 것이다. 조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말로 표현해보고 상임조정위원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본 것이 당장 조정에는 실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정실에서 분쟁에 처한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 페리안드로스의 조정력이 코린토스 번영의 초석이 되듯 우리사회 갈등 지수를 낮추고, 분쟁으로 단절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여 사회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본다.